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85 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: 강대식・유의동・金炳旭

김승수 · 김용판 · 박성민

백종헌 · 신원식 · 양금희

조수진 · 홍석준 의원

(11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으로 한정해놓고 있음.

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.9%로 극히 미미하였으나,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.1%로 증가하였음.

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이바지 하고자 함(안 제1조 및 제3조).

법률 제 호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직계비속의"를 "배우자 및 직계비속의"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"을 "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제3 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 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일 현재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직자 및	제1조(목적)
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	<u>배우자 및 직</u>
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	<u>계비속의</u>
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	
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	
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	
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
제3조(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	제3조(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
사항)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<u>본</u>	사항) <u>본</u>
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(이	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
하 "신고대상자"라 한다)에 대	계비속
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	
신고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